

대한기생충학·열대의학회 “신풍호월학술상[국제협력부문상]” 시상 규정

제정 1996년 9월 13일

개정 2012년 10월 15일

제1조 (목적)

이 규정은 대한기생충학·열대의학회와 신풍제약주식회사 간의 협약에 의해 제정한 ‘신풍호월학술상 [국제협력부문상]’(이하 ‘협력상’이라 한다) 수상자의 심사 선정에 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(수상 후보자 자격)

‘협력상’ 수상 후보자는 국제기생충관리사업 분야에서 탁월한 공적이 인정되는 회원을 주요 대상으로 하며, 기생충학 및 열대의학 분야에서 학술적 연구업적이 우수한 회원도 포함한다.

제3조 (추천위원회)

- ① 협력상 수상 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대한기생충학·열대의학회 주관으로 ‘협력상 추천위원회’(이하 ‘추천위원회’라 한다)를 둔다.
- ② 당해 년도 추천위원은 대한기생충학·열대의학회 회장을 당연직으로 포함하여 3인을 대한기생충학회·열대의학회에서 선임 위촉한다.
- ③ 추천위원회는 매년 8월 중 해당 자격의 3인 이하로 수상 후보자를 심사위원회에 추천한다.

제4조 (심사위원회)

- ① 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후보자를 대상으로 수상자를 선정하기 위해 ‘협력상 심사위원회’(이하 ‘심사위원회’라 한다)를 둔다.
- ② 심사위원은 대한기생충학·열대의학회 회장이 추천한 학회 내·외부의 권위자 5인 내외로 구성한다.
- ③ 심사위원장은 공정성과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대내외적으로 명망이 높은 분을 심사위원회에서 호선하여 위촉한다.

제5조 (심사 및 선정)

심사위원회는 매년 9월 중 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수상 후보자에 대하여 수상의 목적과

취지에 부합하는 탁월한 공적 또는 우수한 학술활동에 대해서 정밀심사를 통하여 합의제를 원칙으로 수상자를 최종 선정한다.

제6조 (수상후보자 제출서류)

- ① 국제 기생충 및 열대의학 관리사업 관련 활동실적 및 주요 공적사항을 포함하는 공적조서 각 3부
- ② 공적사항과 관련된 SCI급 학술지 게재 학술논문(임의 선택 사항) 각 3부

제7조 (시상)

대한기생충학열대의학회 정기총회(매년 10월)에서 신흥호월학술회 대표자가 수상자에게 상패와 상금(일천만원)을 시상한다.

제8조 (부칙)

- ① 이 규정이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 관례에 따르며, 평의원회의 결의에 따라 이 규정을 수정 또는 보완할 수 있다.
- ② 이 규정은 신흥제약(주)의 동의를 거친 후 2012년 5월 일부부터 시행 발효된다.
- ③ 본 ‘신흥호월학술상[국제협력부문상]’은 1996년 9월 13일 제정되고 2회 시상한 ‘신흥호월학술상’을 승계하여 3회부터 시상한다.